

법률상담 검토의견서

수 신 : 의뢰인 ***

발 신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제 목 : 사기죄 성립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검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에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의뢰해주신 내용,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 검토의견은 소송절차, 관련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출할 것을 예정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법률상담에 대한 교육용으로 작성된 검토의견이니 개인적인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질의배경

(아드님, 이하 'A'라 합니다)은 중고거래 중 물품대금을 입금하기로 한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의뢰인께서 입금을 하려 하였으나 판매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계좌를 물었으나 판매자는 A를 신고했다는 내용 및 용서는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의뢰인에게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의뢰인께서는 아드님(A)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가.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성부

1)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기망행위, ②피기망자의 착오, ③피기망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 ④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⑤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⑥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사이,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요건 ①, ⑤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¹⁾

즉 ①기망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고, ⑤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를 통해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만약 A가 처음부터 물품대금 지급의사 또는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물품을 구입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A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입금하기로 한 날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에게 대금입금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알려준 것인지, 물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나 질의 해주신 사실관계만 볼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입금받을 수 없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 이것이 판매자의 실수인지, 판매자가 의도한 것인지(물건을 보내면서 계좌번호를 의도적으로 잘못 알려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모호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판매자가 A에게 물품은 언제, 어떻게 보낸 것인지, 통상 중고거래에서 직거래하거나 입금확인 후에 택배거래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A가 판매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던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나. 결론

의뢰인에게 주신 사실관계가 한정적이지만,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보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대금지급지연 사유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고 물품만 수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사기] [공2003.3.15.(174),748]

령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